

[서식 예] 답변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청구에서 계약의 무효항변(민법 108조)]

답 변 서

사건번호 2000가소000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1. 피고는 원고가 20○○. ○. ○. 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건물 제8층 중 구분점포인 에이 ○○ 호를 ○○○○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약정된 잔금 지급일에 분양대금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합니다.
- 2. 민법 제108조는 제1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이러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의 제3자란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만을 의미하는 것인바,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란 허위표시가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



로 자신의 무엇인가의 행위에 의하여 허위표시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를 의미하고, 자신이 무엇인 가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반사적 이익을 얻음에 불과한 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허위표시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 취지는 이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고유한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 법률관계에 들어간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의 범위는 권리관계에 기초하여 형식적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분양계약은 피고 채권자들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원고의 양해하에 계약의 외형만 갖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합니다. 원고는 이사건 분양계약의 당사자로 피고의 의사표시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는 것을 알았고, 원고는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의 제3자에도 해당할 여지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분양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피고는 워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고자 합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현장 사진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20○○. ○.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 제출부수 ├──	답변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답변서의 제 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 다만, 직권으로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상고심에서 피상고인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의 의	답변서는 피고나 피상소인이 본안의 신청에 대한 답변하려는 사항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민사소송법 제148조, 제428조, 제430조).
기 타	답변서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하는데청구취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작성 .청구원인: 원고의 청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분, 부인할 부분에 대하여 이유를 밝히고.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도 항변사유가 있으면 항변과 동시에 이유를 밝혀야 함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마저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 의제자백(자백간주) 된 피고들과 원고의주장을 다툰 피고들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 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응소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대법원 1980. 9. 26.자 80마403 결정).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의 답변서가 진술되거나 진술 간주된 바 없으나 동 답변서가 제출된 점으로 미루어 변론의전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툰 것으로 볼 것임(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424 판결).